

重機管理法 解説

盧 尚 玉

〈建設部 建設振興局 機材課・機械技佐〉

重機の定期検査 및 點檢, 運轉범위, 免許제도 等に 관한 重機管理法이 83년 12월 31일 國會에서 改正되고 이에 따라 建設部는 施行令을 마련, 施行단계에 있다.

콘크리트·믹서 等 重機の 效率的인 管理는 建設業뿐 아니라 레미콘工業의 成長에 크게 貢獻하므로 建設部關係官의 法令解説을 心는다.

〈編輯者〉

1. 重機管理法의 概要

가. 立法目的

- 重機管理의 適正運用
- 國家有事時 效果的인 資源動員
- 建設工事의 機械化施工 促進
- 國民經濟 發展에 寄與

나. 適用對象

- 重機, 重機操縱士, 重機所有者, 重機事業者, 重機製作者 등

다. 制定 및 改正 現況

- 制定: 1966. 12. 23(法律 第1854號)
- 改正: 4回
- 最近改正: 1983. 12. 31(法律第3710號)

라. 主要骨子

- 重機登錄에 關한 事項
- 重機檢査에 關한 事項
- 重機製作·組立者 登錄 및 重機型式承認에 關한 事項
- 重機事業 許可에 關한 事項
- 重機操縱士 免許에 關한 事項

2. 重機管理法의 主要內容

가. 重機의 範圍

建設工事に 使用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함(法第2條): 別表 1

나. 重機의 登錄

1) 目的

- 重機所有權의 公證
- 國家資源의 總量把握
- 重機動員 体制確立

2) 新規登錄

重機所有者의 住所地 또는 重機의 使用本據地를 管轄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

3) 未登錄 重機는 使用 禁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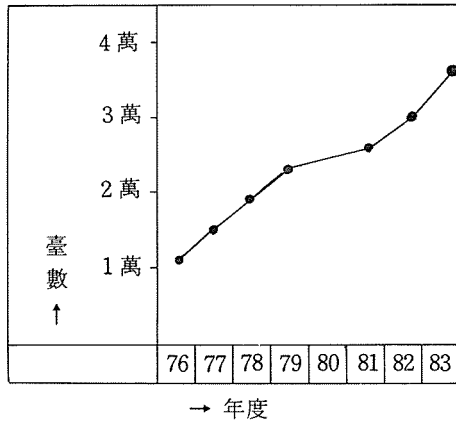
4) 登錄抹消 事由

- 重機가 滅失되었거나 解体된 때
- 構造 및 性能基準에 不適合 할 때
- 重機의 用途를 廢止한 때
- 重機의 車台가 登錄時의 車台와 다른 때
-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때
- 重機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 重機의 運行狀況 申告를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5) 年度別 重機登錄 現況

年 度 別	76	77	78	79	80	81	82	83
登 錄 臺 數	11,354	14,023	19,515	23,075	24,549	26,575	29,978	36,339

重機登錄臺數變化



다. 重機의 檢査

1) 目 的

重機의 構造, 性能과 安全度를 檢査함으로써稼動率을 높이고 安全度의 確保로 重機管理의 效率을 期함

2) 檢査申請

重機 所在地 管轄 檢査代行者에게 申請

3) 檢査의 種類

○ 新規登錄檢査

重機所有者가 重機를 新規로 登錄할 때 받아야 하는 檢査

○ 定期檢査

登錄된 重機를 每年定期的으로 實施하는 檢査 (建設部令에서 檢査對象機種과 回數를 定함).

○ 構造變更檢査

登錄된 重機의 主要構造를 變更 또는 改造하였을 때 實施하는 檢査

○ 隨時檢査

重機의 性能을 點檢하기 위하여 實施하는 檢査

라. 重機製作·組立者 登錄 및 重機型式承認

1) 目 的

重機製作을 規格化 함으로써 國產重機의 性能向上 및 品質提高

2) 重機製作·組立者 登錄

重機를 製作·組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施設 및 技術者를 確保하고 建設部에 登錄

3) 重機型式承認申請

建設部에 重機製作·組立者 登錄을 畢한 者로서 建設部長官에게 申請

4) 重機型式承認 審査要領

○ 重機의 構造 및 性能基準에 適合與否

○ 重機 諸元의 適合與部

○ 타이어 負荷率 適正與否

○ 中古原動機의 使用與否

5) 重機型式確認檢査

○ 國產重機 製作·組立者가 製作한 重機가 重機의 構造性能 基準에 適合한지의 여부와 承認事項과의 一致與否를 檢査

○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한 重機는 登錄不可

6) 國產重機 生産現況

◇ 生産能力

○ 製作公社: 三星重工業(株)外 10 個社

○ 生産機種: 불도우저 外 15 機種

○ 年間生産能力: 8,240 台

◇ 年度別 生産實績

區分 \ 年度別	計	76	77	78	79	80	81	82	83
臺數	21,129	229	1,274	3,160	2,453	1,394	2,235	4,348	6,036
機種數	16	4	9	10	12	11	12	13	13

◇ 製作社別 生産機種 및 能力

業 體 名	生 産 機 種	年間生産能力
三星重工業(株)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3,000
大宇重工業(株)	굴삭기, 지게차, 空氣壓縮機	2,200
江原産業(株)	碎石機	20
東亞建設産業(株)	콘크리트벙칭플랜트, 浚渫船	20
東亞自動車(株)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撒布機	500
現代自動車(株)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1,550
大興機械(株)	空氣壓縮機	200
東明重工業(株)	지게차	100
現代重工業(株)	浚渫船, 로울러	100
仁川造船(株)	콘크리트벙칭플랜트, 浚渫船, 로울러	50
大宇自動車(株)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500
計 11 個社	16機種	8,240

마. 重機事業許可

1) 目 的

- 重機貸與業 및 整備業의 專門企業化
- 重機의 “풀”化로 國家資源의 効率的인 活用

○ 專門化된 施設 및 技術者를 갖춘 者가 整備함으로서 重機의 性能保存 및 安全度 提高

2) 重機事業의 種類

- 重機貸與業

他人의 需要에 應하여 重機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

- 綜合: 2 個機種以上, 50 台以上 保有
- 單種: 1 個機種, 10 台以上 保有
- 特殊重機貸與業: 特殊重機만 保有

- 重機整備業

他人의 委託을 받아 重機를 修理하는등 重機

의 圓滑한 使用을 위한 일체의 行爲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

- 綜合: 重機의 總分解整備
- 部分: 重機의 部分整備

3) 重機事業者 現況

區分	合計	重機貸與業			重機整備業		
		小計	綜合	單種	小計	綜合	部分
計	278	190	80	110	88	24	64

바. 重機操縱士 免許등

1) 目 的

重機의 圓滑한 使用을 위하여 一定한 資格을 갖춘자로 하여금 重機를 操縱하도록 함.

2) 免許試驗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韓國職業訓練管理

◇ 重機操縱士 免許現況

(1983. 12. 31 現在)

重 機 名	計	불 도 우 저	로 우 더	스 크 레 이 퍼	덤 프 트 럭	기 중 기	그 레 이 더 모 우 터	믹 서 콘 크 리 트	지 게 차	로 울 러	휘 니 셔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아 스 팔 트	쇄 석 기	공 가 압 축 기	사 리 채 취 기	준 설 선	굴 삭 기
免 許 者 數	1 1 7, 3 1 4	2 3, 9 0 9	1 7, 9 3 6	2 9 7	6, 0 0 2	2 7, 3 5 4	2, 6 1 7	4, 8 7 2	1 2, 3 3 2	2, 5 7 5	5 1 0	3 0 6	7 5 8	1, 3 5 7	3 0	9 2	1 6, 3 6 7

公團에서 實施(從前：市道知事와 한국직업관리 공단 二元化)

3) 免許發給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해당 技術資格證을 취득한 후 市道知事が 適性檢査後 免許證 發給

4) 重機整備士 免許

免許制度廢止 → 資格證制度

3. 重機管理法 改正 主要内容
(83. 12. 31. 公布)

가. 背景

60年代 및 70年代에 急激한 産業化 및 都市化가 이루어 지는 가운데 建設業의 成長과 併行하여 重機와 操縱員등의 技術人力이 크게 增加하였으며 이에 對應해 나가기 위하여 重機에 대한 定期檢査制와 操縱士 및 整備士의 免許制등 行政規制의 강화가 불가피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制度의 실시로 重機의 稼働率이 提高되고 技術人力을 質的으로 向上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여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重機의 性能이 向上되고 그 型式이 多様化된 현 시점에서 모든 重機

에 대한 定期檢査制의 실시는 그 실효성이 없으며 국가기술자격법과 중복되어 있는 중기조 중사 및 정비사면허제는 오히려 國民의 不便을 加重시켜 왔다.

따라서 重機에 대한 定期檢査 및 重機操縱士 免許制度를 合理的으로 改善補完하고 道路를 運行하는 重機에 대하여는 그 安全運行을 위하여 定期點檢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重機整備士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一元化시켜 重機整備士 免許制度를 廢止하고 重機의 機種을 再分類하며 各種申告事項을 간소화 하는 등 關聯制度를 全面 改編하여 國民의 便益을 증진하고 重機管理를 效率化하기 위하여 政府의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作業의 一環으로 本 改善作業을 推進하게 된 것이다.

나. 改正内容

1) 定期檢査制度의 改正

重機의 定期檢査制度에 있어 自走式 重機는 年 1回, 非自走式 重機는 每 2年 1회씩 檢査를 받던 것을 불도우저·쇄석기등 非自走式 重機는 定期檢査制度를 廢止하고 年 1회씩 稼働상황을 시·도지사에게 申告하도록 함으로서 實効性이 없는 檢査를 위하여 檢査員이 作業現場

까지 찾아가서 육안검사를 하는 데 따른 행정적 낭비와 不條理 要因을 除去하고 한편 重機所有者의 不便을 解消하도록 하였다.

2) 重機定期點檢制度의 新設

自動車와 構造 및 機能이 유사하고 道路를 주로 주행하는 重機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하여는 現行 자동차점검제와 같이 重機整備業체에서 定期點檢을 받도록 하여 安全도를 높이므로써 事故를 豫防토록 하였다.

3) 重機型式確認 檢査制度 改正

重機製作業체에서 生産되는 重機에 대하여 每 台마다 型式 確認 檢査를 實施하던 制度를 바꾸어 앞으로는 同一型式中 最初에 生産한 1 台에 대해서만 確認檢査를 받도록 하고 계속 生産되는 同一型式의 重機에 대하여는 6個月마다 期間內 生産한 重機 1 台씩만 確認檢査를 받도록 制度를 改善함으로써 量産體制를 갖춘 製作業체의 不便을 解消하고 生産能率을 提高토록 하였다.

4) 重機操縱士 및 整備工 免許制度補完

○重機操縱士 免許試驗의 一元化

免許試驗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一元化 시킴으로써 종래 市道知事와 직업훈련관리공단이 각기 시행함에 따른 人力과 經費의 낭비를 막도록 하였다.

○重複된 重機整備士 免許制度廢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 부터 重機整備에 관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 그 자격을 活用 하자면 建設部長官의 별도 免許를 받아야 하는 不便을 解消하기 위하여 建設部長官의 免許制度를 廢止하였다.

○重機의 運轉範圍 擴大

重機中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自動車 第1種 大型免許 소지자가 조종하도록 하고 기존 同重機 조종면허 소지자는 自動車 1種 大型免許로 갱신 하여주므로써 自動車 1種 大型

免許 소지자가 重機 덤프트럭을 조종가능토록 하였고 또한 重機 덤프트럭 조종면허 소지자는 自動車 1種 大型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運轉範圍를 擴大 하였고 한편 특수자동차에서 重機로 再分類되는 機種의 特殊自動車 運轉免許 소지자는 해당 重機 조종면허로 갱신하여 주도도록 하였다.

5) 重機 및 操縱士 申告制度 簡素化

○重機의 所在地 變動 申告制度改善

모든 重機는 市·郡을 移動 할 때마다 전임지 市長, 郡守, 區廳長에게 5日 以內에 重機 所在地 變動申告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때는 20만원 以下の 벌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重機中 機動性이 있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有事時 신속하게 動員이 가능함으로 自動車와 같이 申告制度를 없애도록 하여 획일적 규제에서 오는 國民의 不便을 解消토록 하였다.

○操縱士 身上變動申告制度 改正

重機操縱士는 주소 또는 근무처의 變更이 있을 때에는 30日 以內에 거주지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以下の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 항상 事業場을 따라 移動해야 하는 중기조종사에게 더 할 수 없는 不便과 부담이 되어왔다. 이를 是正하기 위하여 不必要한 근무처변동 신고와, 同一 市道內의 住所變更 申告는 廢止하고 他 市道間 移動時에 한해서 申告토록 하였다.

6) 重機區分의 再調整

지금까지 規格이 小型인 것에 대하여는 重機로 分類치 아니하던 것을 建設工事に 使用되는 것은 規格에 관계없이 重機로 分類하고 다만 덤프트럭에 한하여는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경우로 하되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 미만의 덤프트럭은 그 主用途에 따라 重機 또는 自動車로 登錄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其他 國民便益을 위한 改正措置

○임시운행허가권을 市·郡에 위임, 市·道 知事が 시행하던 重機의 임시운행허가를 市長, 郡守에게 위임하여 國民의 便宜를 도모토록 하였다.

○重機등록번호 刻字의 一元化

重機를 등록할 때에는 製作會社에서 打刻한 제작번호 以外에 등록관청이 별도 번호를 打刻하던 2重 刻字 제도를 앞으로는 제작회사의 제작번호를 活用하고 등록관청의 打刻制度는 廢止하므로써 중복에서 오는 낭비를 是正토록 하였다.

였다.

○其 他

- 重機事業許可 基準의 일부를 再調整하였고,

- 重機의 登録이 抹消된 경우 중기등록 원부등본과 기능회복증명서를 첨부하면 재등록 신청이 可能하던 것을 重機로서 機能을 발휘할 수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시는 재등록이 不可能하도록 하였다.

4. 重機管理法令 要點整理

가. 重機登録

區 分	法令條項	內 容
登 錄	法第 3 條	1) 市道知事에게 申請 2) 市道知事は 檢査代行者로 하여금 新規登録檢査를 施行케하여 그 結果를 확인 후 등록원부에 기재하며 所有者에게는 등록증을 교부 3) 重機型式確認檢査를 받은 重機는 新規登録檢査 免除
登録申請	施行令 第 4 條	1) 申請書 提出: 重機 所有者의 住所地 또는 사용본거지 市道知事 2) 申請書類 가) 重機製作證(국내에서 제작한 중기의 경우) 나)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중기의 경우) 다) 중기등록원부등본(등록말소된 重機의 경우) 라)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중기의 경우) 마) 重機諸元表 3) 申請期間 가) 취득일로부터 30日以内 나) 전시, 사변 및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時 取得日로부터 5日以内 4) 市道知事は 登録現況을 每月末基準, 作成 다음달 10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報告
登録順位	施行令 第 5 條	1) 重機登録은 해당 등록신청서 또는 申告書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登録된 權利의 우선순위	施行令 第 6 條	1) 同一機種: 登録의 先後 2) 부기등록 순위 ○주등록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선후
登録事項의 變更申告	法第 4 條	1) 重機登録事項에 變動이 있을 때 市道知事에게 申告 2) 具備書類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罰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 중기등록증 다) 중기검사증 3) 변경신고 받은 市道知事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기등록원부, 중기등록증 중기검사증에 變更事項 기재 나) 중기등록증, 중기 검사증 所有者에게 교부 다) 해당 重機의 檢査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 4) 申告期間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變更日로부터 30日以内 나) 전시, 사변 및 이에 準하는 非常時 變更日로부터 5日以内 5) 罰則: 허위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萬원 이하 과태료
登録移管	施行令 第8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登録地 변경시 소유자는 登録移管 申告書에 주소, 사용본거지의 사실증명 및 중기등록증을 첨부하여 登録地 市道知事에게 提出 2) 申告받은 市道知事は 등록원부 등본을 새로이 登録官廳이 되는 市道知事에게 송부 3) 해당 重機의 檢査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4) 새로이 登録官廳이 되는 市道知事は 등록원부에 등록후 신고인과 각자 對稱자에게 통지하고 新登録證 교부 5) 구 등록지 市·道知事は 당해 중기등록 원부 폐쇄
所在地 變動申告	施行令 第9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重機所在地(市·郡)에 變動이 있을 때 申告(다만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除外) 2) 申告期間: 變動日로부터 5일 이내 3) 申告官廳: 새로운 所在地 市長, 郡守, 區廳長 4) 市·道知事は 現況을 每分期末基準 다음 달 15日까지 建設부장관에게 보고
登録의 更正	施行令 第10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登録後 착오, 누락시 附記로 更正등록 2) 그 뜻을 등록 名義人에게 通知
登録의 抹消	法第5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抹消事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중기가 멸실, 해체된 때 나) 중기가 구조성능기준에 適合치 아니하여 그 機能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 重機의 用途를 廢止할 때 라) 重機의 車台가 등록시의 車台와 다를 때 마) 허위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등록한 때 바) 重機檢査의 有効期間 만료후 3月以内에 檢査받을 것을 催告받고 그 기한을 경과한 때 사) 定期檢査對象 除外 重機의 運行상황 신고를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未登録 重機의 使用禁止 (罰則)	法第6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전 임시운행 → 市長, 郡守, 區廳長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함. 2) 罰則: 미등록중기 사용자나 운행자는 1年以下の 징역 또는 100萬원 이하의 벌금
臨時運行 許可	施行令 第12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시운행허가기준: 1個月 以内 2) 國産開發 重機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따로 定하도록 함.
重機登録	法第7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市·道知事は 등록원부비치, 관리

原簿의 備置	施行令 第11條	2) 등록원부 보존기간 가) 등록이관시 - 3년간 보존 나) 등록말소시 - 5년간 보존
登録證의 再交付	施行規則 第7條	1)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再交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증 첨부
登録의 標識	法第8條	1) 등록번호표 부착 및 登録番號刻字(製作社 - 連番號活用) 2) 등록번호의 각자는 市道知事が 지정한 자만이 할 수 있음
刻字代 行者指定 (罰則)	施行規則 第11條	1) 市道知事が 指定 2) 指定後 建設部長官에게 보고 3) 罰則: 許可없이 등록번호를 부착하거나 刻字를 施行한 者는 1年以下의 징역 또는 100萬원 以下の 벌금
標識의 도말금지 (罰則)	法第9條	1) 번호표나 각자의 도말금지 2) 식별을 곤란하게 하지 말 것 3) 罰則: 50萬원이하의 벌금

나. 重機檢査

區 分	法令條項	內 容
檢査의 種類 (罰則)	法第12條	1) 重機所有者는 重機檢査代行者가 實施하는 다음의 檢査를 받아야 함. 가) 新規登録檢査 나) 定期檢査 다) 構造變更檢査 라) 隨時檢査 2) 檢査代行者가 檢査실시후 5日以内 市道知事에게 結果報告 3) 整備명령을 하여야 할 重機를 즉시 보고 4) 罰則: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重機를 使用한者: 100萬원이하 벌금
新規登録 檢査	施行規則 第20條의2	1) 重機를 新規로 등록 할 때 실시하는 檢査(重機型式確認檢査를 받은 重機는 除 外) 2) 檢査者: 所在地 檢査代行者 3) 檢査代行者는 檢査후 시도지사에게 結果 보고 4) 市·道知事は 檢査結果 確認후 등록 및 檢査證 교부
定期檢査	施行規則 第20條의 3 第21條 第22條	1) 建設部令에서 定하는 重機에 대하여 年1回 檢査 ※ 자주식중기: 年1回 비자주식중기: 정기검사폐지 2) 檢査證 有効期間 만료일까지 檢査증 사본 첨부하여 중기 所在地 檢査대행자 에게 申請 3) 定期檢査對象이 아닌 重機(비자주식중기)의 所有者는 每年1回 重機運行狀況 황을 檢査대행자를 經유하여 市道知事에게 신고 4) 檢査延期: 유효기간만료일까지 檢査대행자에게 신청 5) 檢査延期期間: 1회에 한하여 3個月이내
構造變更	施行規則	1) 登録된 重機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개조하였을 때 實施

檢査	第24條	2) 申請：변경일로부터 10日以内 所在地 檢査대행자에게 신청 3) 具備書類 가) 重機檢査證 나) 變更部分 圖面 다) 構造變更 證明書(정비업자 발행)
隨時檢査	施行規則 25條	1) 性能이 不良하거나 事故가 빈발한 중기에 대하여 市道知事가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 實施하는 檢査 2) 檢査를 기피할 경우：檢査증효력상실
整備命令	施行規則 第26條	1) 構造性能基準에 부적합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 2) 檢査한날로 부터 5日以内 市道知事가 命令 3) 整備命令期間：3日以内, 1회에 한함 4) 重機所有者는 정비기간 내 정비완료하고 재검査 신청을 하여야 함.
出張檢査 및 點檢	施行規則 第26條의 2	1) 다음의 重機는 重機檢査代行所에 입고하여 檢査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가)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콘크리트펌프 다) 덤프트럭 라) 노상안정기 마) 아스팔트 살포기 2) 다만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거나 自体重量이 40t을 초과하는 경우와 軸重이 10t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고대상重機라도 出張檢査 또는 出張點檢을 받을 수 있음.
檢査代行	法第12條의 2 施行規則 第19條의 2	1) 建設部長官이 중기검査에 관한 시설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지정하여 중기검査의 전부 또는 一部를 代行하게 할 수 있음. 2) 代行者指定權者：建設部長官 3) 檢査代行者는 세부검査업무 규정을 정하여(건설부장관승인) 그에 따라 檢査 시행
檢査代行 所設置基準	施行規則 第 19 條의 3	1)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마다 1 個所 설치 2) 직할시의 경우 인근의 1개도와 合하여 1 個所 설치할 수 있음
檢査代行의 指定取消 및 事業停止 事由	法第12條의 2	1) 取消 및 停止事由 가) 허위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때 나)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때 다) 不正한 方法으로 중기를 檢査한 때 라) 경영불실 등의 사유로 檢査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認定된 때 마) 중기관리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宣告를 받은 때 2) 사업정지기간：6월 以内
重機의 定期點檢 (罰則)	法第12條의 3	1) 建設部令에서 정하는 重機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함. 2) 點檢對象重機：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3) 點檢實施者：重機管理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 허가를 받은 者

		4) 點檢回數：年 1 回 5) 罰則：定期點檢을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重機의 製作組立 者 登 錄 및 型式承認 (罰則)	法第13條 施行令 第13條	1) 重機製作·組立者：施設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建設부에 登 錄 2) 登 錄 具 備 書 類 가) 地 址 及 建 物 에 關 한 登 記 부 등 본 나) 施 設 及 機 器 · 機 具 의 保 有 權 을 證 明 할 수 있 는 서 류 다) 확 보 하 고 있 는 技 術 者 名 單 과 그 면 허 증 사 본 3) 重 機 를 製 作 · 組 立 하 고 자 하 는 者 는 建 設 部 에 登 錄 후 建 設 部 長 官 의 型 式 承 認 및 確 認 檢 査 를 받 아 야 함. 4) 型 式 承 認 具 備 書 類 가) 中 機 의 製 作 圖 나) 設 計 圖 및 設 計 說 明 書 다) 強 度 計 算 書 라) 外 觀 圖 마) 自 檢 査 方 法 書 바) 最 初 1 대 의 製 作 , 組 立 에 정 공 정 표 5) 型 式 承 認 取 消 事 由 가) 型 式 承 認 後 6 月 以 內 製 作 · 組 立 에 착 수 하 지 아 니 한 때 나) 登 記 內 용 과 다 른 型 式 을 製 作 · 組 立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승인 받은 경우 제외)한 때 6) 型 式 承 認 變 更 事 由 가) 作 業 場 所 의 製 作 圖 에 승 인 된 형 식 외 의 部 分 이 추 가 되 는 경 우 나) 性 능 에 영 향 을 미 치 지 않 는 범 위 내 의 원 동 기 형 식 변 경 다) 명 칭 및 경 미 한 組 立 變 경 이 있 는 경 우 라) 기 타 建 設 部 長 官 이 必 要 하 다 고 인 정 하 는 경 우 7) 罰 則 : 確 認 檢 査 를 받 지 않 거 나 방 해 한 자 는 100 萬 원 이 하 벌 금

다. 重機事業의 許可

區 分	法令條項	內 容
重機事業 의 許可 (罰則)	法第14條	1) 重機事業：重機貸與業 重機整備業 2) 許可權者：代與業→建設部長官 整備業→市道知事 3) 罰則：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營爲한자는 1年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重機貸與 業의 許可	施行令 第14條	1) 申請：建設部長官에게 2) 具備書類 가)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주민등록제서, 법인 → 등기부 등본) 나) 중기보유명세서 및 등록증사본 다)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라) 駐機場 시설보유증명서류등 3) 許可區分

		가) 종합중기 대여업 나) 단중중기 대여업 다) 특수중기 대여업				
重機貸與業의許可基準	施行規則第30條	1) 事業範圍				
		種別	事業範圍			
		綜合	2個기종 이상의 중기를 보유하여 대여			
		單種	1個 기종의 중기를 보유하고 대여			
		特殊	特殊중기만을 보유하고 대여			
重機貸與業의許可基準	施行規則第31條	1) 許可基準				
		區分	名稱	種別內譯		
				綜合	單種	特殊
		重機	保有台數	2個 기종이상 50台 이상	1個 기종이상 10台 이상	3個 기종이상 6대 이상
		垡地 및 建坪	주기장 사무실	600m ² 66m ²	300m ² 33m ²	300m ² 33m ²
	附帶施設	주기장 구비조건	○바닥이 평탄할 것 ○울타리 시설을 할 것			
重機整備業許可	施行令第15條	1) 申請：市道知事에게				
		2) 具備書類 가) 주민등록표초본(본인 → 주민등록증제시, 법인 → 등기부등본) 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 등본 다) 중기정비시설 보유 증명서류 라) 중기정비사 명단 및 면허증사본등				
重機整備業의事業範圍	施行規則第33條	項 目	種 別			
			綜合 部 分			
		1) 原動機部分 가) 실린더 해드의 탈착정비 나) 실린더 피스톤의 분해정비 다) 크랭크샤프트, 캠 샤프트의 분해정비 라) 연료(연료 공급 및 분사) 펌프의 분해정비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 부분의 정비 2) 車體部分 가) 후레임의 조정 나) 로울러, 링크, 트랙 슈의 재생 다) 위의 부분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 ○ ○ ○			

重機整備 業의許可 基準	施行規則 第34條	1) 許可基準				
		區 分	名 稱	諸 元 等	種 別 內 譯	
					綜 合	部 分
		垜 地 및 建 物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 속실 등 작업장, 주기장 등	1,300m ³	600m ²
			2. 옥외작업장 면적		1,900m ²	900m ²
		附帶施設	1. 체인블록	2.5톤 이상 중기세차시설	5 톤	2 톤
			2. 트럭		○	○
			3. 세차시설		○	○
4. 폐유처리시설	○		○			
5. 검차대	○		○			
整備機械類	트랙(링크) 프레스(임팩트 렌치 포함) 등 12종		12種 보유	4 種 보유		
檢査 및 試驗機	마이크로 메타 등 23種		23種 보유	16種 보유		
工 具	밸브 시트 캣타 등 14종		14種 보유	11 種 보유		
技 術 者	중기정비기사 2급이상		1 명 이상	-		
	중기정비기능사 2급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국가기술훈자 법에 의한 중기정 비기능사보이상		1 명 이상	1 명 이상		
重機事業 者의 缺格事由	法第15條	1) 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者 2) 事業許可 취소일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금고이상의 刑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決定된 날 로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法人의 任員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는 1月以内 그任員을 개입하여야 함				
事業의 許可取消 停止 (罰則)	法第16條	1) 停止命令權者 대여업: 건설부장관 정비업: 시도지사 2) 取消 또는 停止事由 가) 許可받은 후 6個月以内 事業開始를 않거나 1年以上 그 事業을 休止한때 나) 不正한 方法으로 허가받은 때 다) 許可基準未達成				

		라) 罰金以上の 刑의 宣告를 받은 때 3) 罰則：取消되거나 重機事業의 停止處分을 받은 후 중기사업을 계속 영위한者は 1年이하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事業者의 申告	法第17條 施行令 第16條	1) 申告 대여업 : 건설부장관에게 정비업 : 시도지사에게 2) 申告期間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5일 이내 3) 변경申告 對象事由 가)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주소지 또는 주소의 변경 다) 사업의 개시, 휴지 또는 폐지 라) 영업의 양도 또는 상속과 法人의 合併

라. 重機操縦士 免許

區 分	法令條項	內 容	
重機操縦士 免許 (罰則)	法第19條	1) 試驗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실시 (중전 : 시·도지사도 시행) 2) 免許 市道知事が 적성검사후 면허 발급 3) 許免의 種類 4種 14機種 4) 罰 則 무면허 조종자는 50만원이하 벌금	
重機操縦士 免許 種類	施行規則 第38條	種 別	機 種 名
		1種	4 ① 불도우저 ② 로우더 ③ 스키레이퍼 ④ 굴삭기
		2種	2 ① 기중기 (항타 및 항발기 포함) ② 모우터 그레이더
		3種	3 ① 로울러 (진동로울러 포함) ② 지게차 ③ 아스팔트휘니셔 (콘크리트휘니셔, 스프레더, 골재살포기 포함)
		4種	5 ①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밧칭 플랜트 포함) ② 쇄석기 ③ 공기압축기 (천공기 포함) ④ 준설선 ⑤ 사리채취기

※ 자동차 1종대형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重機操縱士의 適性檢査 基準	施行規則 第42條	1) 양안중 1안의 시력은 0.7이상 1안 시력은 0.3이상 2) 청력은 10m 거리에서 90호 온의 소리가 들릴 것 3) 시각은 150° 이상 4) 심신 장애자가 아닐 것 5)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가 아닐 것
重機操縱士 免許證再交付	施行規則 第47條	1)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 재교부는 신청서에 면허증(훼손의 경우) 및 증명사진 1매 첨부 2) 市道知事에게 提出
重機操縱士 缺格事由	法第20條	1) 18세 미만인자 2) 심신장애자 3) 사지의 활동이 정상이 아닌자 4) 마약 또는 알콜중독자 5) 면허 취소일로부터 1年이 경과하지 않은 자
重機操縱士 免許의 取消停止 (罰則)	法第21條	1) 事 由 가) 심신장애자 및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 나) 不正한 方法으로 중기조종사 면허를 받은 때 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에 미달될 때 라) 중기조종에 있어 중대한 사고를 발생했을 때 마) 중기관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2) 취소 또는 3個月 이내의 정지 3) 罰則: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 중기를 계속 조종한 자는 50萬원이하 벌금
重機操縱士의 適性檢査	法第22條 施行令 第17條	1) 重機操縱士는 5년마다 市道知事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2) 다만 해외거주, 군복무, 입원가료, 복형등 사유가 발생하는 사유종료후 3月 이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重機操縱士 申告義務 (罰則)	法第23條 施行規則 第49條	1) 申告: 市道知事에게 2) 申告事項: 본적, 성명, 주소(同一市道内이동은 제외) 3) 申告期間: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시는 변동일로부터 5日以内 4) 罰則: 申告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자는 30萬원이하의 과태료

※ 別表 1 重機의 範圍

重 機 名	範 圍
1. 불도우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3. 로우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重 機 名	範 圍
4. 지 계 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를 가진 것
5. 스크레이퍼	토사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 운송차량법에 의거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7. 기 중 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 식은 제외한다.
8. 모우터그레이더	정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로 올 러.	1.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벡칭 플랜트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휘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 스프레다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 배송능력 매시간당 5m ³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
16. 아스팔트믹싱 플랜트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휘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이동식으로 20kW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m ³ (매평방센티미터당 7kg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 공 기	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 장치를 가진 것
23. 향타 및 향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햄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 설 선	펌프식, 바켓식, 덂퍼식 또는 그레브식준설선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기타중기	이 표에 계기한 중기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건설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

正直앞에 不信없고 公正앞에 不平없다